

2022 국세행정포럼



가. 개요

- 주 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역할과 과제
- 일 시: 2022. 12. 19.(월) 15:00~18:00
-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 주 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후 원: 국세청
- 발 표
 - ①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② 국세청 세금비서 도입 방향 및 로드맵(윤창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 ③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 사회자 및 패널: 정지선(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고은경(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전규안(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최원석(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박명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변혜정(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오문성(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변영선(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하나경(세무사)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2 국세행정포럼’이 2022년 12월 19일(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포럼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세 가지 주제의 안건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하였으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박성진 소장은 세 번째 주제인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 발제를 담당하였다. 이후 발제와 토론 내용은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2022 국세행정포럼(2022. 12. 19.,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나. 발제 요약

- (연구배경) 공익법인의 부실한 회계처리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의 각종 의무가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됨
 -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이 현재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변경된 제도로 인해 공익법인에 발생한 애로사항 등 최초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공익활동 저해 등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 필요
-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각종 의무규정 및 제도를 파악하고 실효성을 분석하여 공익법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제도변화 성과) 공익법인 관련 최근 세법상 제도변화에 따른 성과를, 크게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공익성 및 관리강화로 구분해서 살펴봄
 - (투명성 제고)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을 통해 통일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공시확대를 통해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이 결산서류를 공시하게 됨과 동시에 공익법인의 회계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가 강화됨
 - (공익성 및 관리강화)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의 확대⁴⁾를 통해 공익활동 관리가 강화되었고, 공익법인 지정 및 사후관리 등 주요 업무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됨
- (제도개선 검토) 공익법인 관련 의무규정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공익법인에 부담이 높아진 공시제도(공시서식, 공시절차, 공시지원 등)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회계감사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함
-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을 위해 공시가 확대되고, 자료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공익법인의 불성실 공시 및 재공시 등에 따른 문제가 다수 지적됨
 - 이에 따라 공익법인의 공시제도에서 공시사항, 공시절차, 공시지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그림 1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출처: 박성진,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2022 국세행정포럼 발표자료.

4)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수익사업용 자산가액 1%) 대상이 기존 성실공익법인에서 자산 5억원, 수입 규모 3억원인 공익법인으로 확대되었고,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일원화되면서 기존 일반공익법인도 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이 70%에서 80%로 상향됨.

- (공익법인 의무 제출서류 간소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 각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작성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여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통합운영을 위해 일부 서식에서 차이나는 부분을 병합하고, 중복 제출에 따른 공익법인의 행정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공시서식 개선) 공익법인의 사업수행 결과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비용체계 개편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와 관련한 이슈를 검토함
 - (공익법인 비용체계) 공익법인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비용이 기타비용으로 많이 구분되는 이슈 해소를 위해 비용 구분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음
 - 기존 분배비용을 현물지원과 현금지원으로 세분화하고, 공익법인의 각종 공익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서비스 지원비용(신설)으로 분류하여 공익목적 사업비용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함
 - (결산공시 지침)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를 위해 재무정보를 재가공할 때 각 공익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부문 구분 및 계정 선택 등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통제하고 통일성 있는 재무정보 공시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작성지침 마련 필요
- (공시절차 개선) 공익법인의 빈번한 재공시를 통제하고 공시품질의 제고를 위해 결산서류 재공시 사유 및 수정내용, 횟수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제안
 - 또한 오류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재 누락 및 자료 간 불일치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익법인들이 공시서류 제출 전 사전점검해 볼 수 있는 오류사례집 또는 자가점검 리스트의 배포를 제안함
- (공시지원 강화) 공익법인의 공시와 관련해서 국세청의 정기적인 교육운영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에서는 여전히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공익법인회계기준 등 회계이론에 대한 온·오프라인 정규과정 개설 및 운영
 - 공익법인 결산서식과 관련하여 작성방식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문화예술, 장학, 사회복지 등)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검토 필요
 - 공익법인 실무자를 위한 사례 강화 및 실습운영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외부 회계감사) 공익법인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서 획일적인 자산 규모 기준 (1천억원 이상)을 좀 더 세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익법인과 산업협력단 등은 주무부처로부터 별도의 감사나 감리 등 관리를 받고 있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실효성이 낮고 과도한 행정부담으로만 이어질 우려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함
- 특히 지방출자·출연기관⁵⁾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와 감사인 지정이 중복되는 우려가 있음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단일 기준인 자산 규모뿐만 아니라 기부금, 정부보조금 등 사업운영 규모를 고려하여 추가로 지정이 필요한 공익법인을 검토하는 등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토론 요약

전규안 교수(숭실대)

- 공익법인 제출서류 간소화와 관련하여 한 번의 서류 제출로 모든 제출의무가 완료되도록 개선 필요
- 재공시 관련하여 현재 주식회사의 재공시 사례를 참고하여 보완 필요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경우 수정 전·후의 공시내용이 그대로 보존되며, 수정사항에 대한 안내 및 수정 전 공시에 대해 최종 공시가 아니라는 문구 등 삽입
 - 이를 통해 재공시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음
- 공익법인 공시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회계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회계전문가의 연수시간 인정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활용한 방안을 통해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고려

5)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이 추천한 공인회계사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 또한 소상공인이 회계전문가에게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처럼 공익법인도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회계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일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 고려 필요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독립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현재 자산 기준에 수익금액을 포함한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 대상 선정 필요
-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주기적 지정대상 선정 및 제외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또한 감사인 지정과 관련하여 감사보수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일정 부분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감사인과 공익법인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일반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뿐 아니라 공익법인의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함
- 공익법인 홈페이지에서 국세청 결산서류 공시를 바로 링크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음
- 주식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와 같이 연결공시를 도입하여 내부거래 제거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방안 고려
-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공익법인을 규제·감독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 본연의 목표를 잘 달성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인식해야 함

오문성 교수(한양여대)

- 공익법인은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필요
- 공익법인의 제출서류 간소화 및 서식 개선의 문제는 규제 완화의 문제이므로 적극적인 개선 필요
- 감사인 주기적 지정 제도는 공익법인이 4년 자유선임을 하는 중에도 이후 지정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함

최원석 교수(서울시립대)

- 공익법인을 포함한 비영리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강화 필요
- 대학을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에서 공익법인 실무자나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비영리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공익법인 실무 개선 도모

홍범교 조세정책연구실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공익법인 관리·감독이 국세청으로 일원화되는 상황에서 국세청 인력 증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설립하여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하며 위원회에서 감독하고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방법 고려
- 공익법인 재공시는 제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정 요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세청의 인력 부족으로 모든 공익법인의 검토 및 시정 요구가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됨
- 중소 공익법인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수에 즉각적인 제재 이전에 재공시 횡수 제한 및 재공시 횡수 및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선의의 기부자에게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형평면제처분제도 도입 필요
- 형평면제처분제도는 조세채권의 확정과 징수에서 과세관청이 조세감면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 제도를 통해 선의의 기부자가 사법 절차를 통해서만 구제되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음
-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평가한 정보를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 고려
- 한국가이드스타 등 공익법인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평가한 정보를 공시정보와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면 일반 기부자의 정보 이용 및 기부금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변영선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삼일회계법인)

- 주무부처, 행안부 등 공익법인의 서류 제출이 많은 상황에서 세법 내의 공시 서류 통합은 매우 필요한 사항
 - 이와 더불어 기부금의 사용내역뿐 아니라 운용소득의 사용내역도 공개해야 기부금을 활용한 공익법인 지출의 완전성 체크가 가능
- 공익법인이 용역 서비스를 통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비스 비용을 분배비용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시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공시서식 마련 필요
- 공익법인 공시제도 도입 초기이므로 공시 오류사항이 많은 상황이며,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하려는 의지가 있는 공익법인이 있어 재공시가 많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음
 - 공시 자체를 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공익법인이 공시할 수 있도록 완전성 체크 필요
- 공익법인 관련 제도를 수행해야 하는 국세청의 비영리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인력 확보 필요

